

의안번호	2218002
의 퇴 인	김현의원
회 답 일	2026. 6. 15.
추계번호	26B1853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(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 신설	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·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, 제공하여야 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기관등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계,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4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학습용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 (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 신설	—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자의 통합제공시스템 연계제공 의무화(제2항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	—국가기관등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수행자에게 연계·제공에 필요한 지원 실시(제4항)	
		—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학습용데이터의 품질 관리 등(제5항)	•미대상 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*을 기 실시하고 있음 *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사업('26년 예산: 33,511백만원) 내 공공, 민간의 학습용데이터의 품질관리(추론 데이터 구축 품질관리, 데이터 등록·전환을 위한 품질관리 등)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

2. 상세 사유

- **현행법¹⁾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**
 -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·관리하는 ‘학습용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’을 구축 및 운영 예정임(기존 AI허브 포털을 확대 개편)

[표 1] 학습용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개요

○ (개요) AI허브 포털*(AI Hub, '17년~)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('26. 1.)에 맞춰 학습용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으로 개편 추진 중('26. 12월, 시범운영 예정) * 국내 AI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·중소기업 등에서 자체 확보가 어려운 AI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 구축·개방 ○ (기능 및 역할) 공공·민간이 보유한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능형 검색, 거래 활성화 지원, 기관별 활용정보 제공, 인터페이스 개선 등 추가기능 구현 및 기능 고도화 추진 ○ (분야별 AI학습용데이터 구축 현황)								
('25년 기준)								
분야	한국어	영상 이미지	교통 물류	헬스케어	재난안전	농·축·수산	기타*	계
합계	188	173	100	126	112	89	115	903
*기타: 문화관광, 스포츠, 제조, 로봇틱스, 교육, 법률, 금융, 지식재산 등 포함								
○ (예산 현황)								
(단위: 백만원)								
사업명	사업 내용						예산('26)	
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 (AI 허브 운영)	통합제공시스템 구축·운영(시스템 운영, 표준 및 수집체계 마련, 데이터 연계·지원 등)						30,000	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1) 제15조(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)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(이하 “통합제공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
-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·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습용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·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, 연계·제공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 및 공공기관, 기업, 연구소 등의 학습용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·제공*하고 있음. 2026년에도 중앙행정기관별(소속·산하기관 포함)로 구축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현황 파악 및 추후 구축될 통합제공시스템으로의 연계·제공을 위해 현황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AI학습용데이터를 선정·가공하여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할 계획임
 - * 2025년 기준: 14대 분야 총 903종의 데이터 연계·개방, 누적 활용건수 115만건
- 또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습용데이터 표준 및 수집체계 마련, 데이터 품질 개선,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술적 지원 등 학습용데이터 보유기관의 학습용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2]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(AI 허브 운영)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2026
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 (AI 허브 운영)	공공·민간의 기구축·구축 예정인 AI학습용 데이터를 모으고, AI산업 수요에 기반하여 기존 데이터를 기계학습 가능한(Machine-Readable) 데이터로 전환·개방하기 위하여 현 AI허브를 “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”이자 “한국판 허깅페이스”로 개편 － (표준·수집체계 마련) 범국가 데이터 수요조사, AI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표준 개발·확산, 데이터 이관·등록체계 운영, 외부기관 플랫폼 연계 프로토콜 개발 － (통합제공체계 연계 지원) ‘25년 외부기관 학습용 데이터 등록 수요와 민간·공공 데이터 현황,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며, 민간·공공 데이터 등록 요청 데이터 및 고수요 보유 데이터의 품질 개선, 개인정보 탐지 등을 지원하고 데이터 등록 － (통합제공시스템 기능 구현) 이용자가 개방한 데이터들을 연계·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기능 지원 등	30,0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·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·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할 경우,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범위 및 수,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·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